

예 산 총 칙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56,848,099	19,705,443
일반회계		645,079,325	19,352,380
특별회계		11,768,774	353,063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1,768,774	353,063
	건축진흥특별회계	218,931	6,568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753,939	22,618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1,231,674	36,950
	드림빌특별회계	444,150	13,325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54,476	4,634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96,100	2,883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39,658	10,19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503,446	165,103
	장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6,400	792
	장성군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3,000,000	90,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8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